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의안 번호	25313
----------	-------

동의연월일 : 2023. 11. 9.

동 의 자 : 박주민 의원 등 168인

주 문

2023년 11월 9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

동의이유

가. 2023년 2월 21일 제403회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2023년 5월 24일 본회의 부의요구를 의결하여, 국회법 제86조제4항 단서에 따라 2023년 6월 30일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기에 이룸.

나.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

류는 노동자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노동자와 그 가족을 압박해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해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사용자의 행태에 대한 문제 제기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 일명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수 의원들이 2020년부터 11건의 법률을 발의했고, 5만 명 국민동의를 받은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소위에 제출되었으며, 그 후 2022년 11월부터 4차례 법안소위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듭하고 안전조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2023년 2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여당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거듭함.

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노동3권과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구현하고, 대법원 및 하급심의 판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의 개념을 대법원의 판례 등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확대하고자 했으며, 1997년에 특별한 근거 없이 축소되었던 정당한 노동쟁의행위의 범위를 과거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개인에게 손배·가압류가 과도하게 청구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

어 있다는 데 의미가 있음.

마.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처리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음.

바. 따라서 2023년 11월 9일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5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심의·처리할 것을 동의함.